

속초지역의 분단트라우마 양상과 극복방안 -납북어부를 대상으로

엄경선 (설악신문 프리랜서기자)

남부어부 귀환 사진



1981년 5월 19일 귀환하는 남진호 (안정호, 강종배씨)

속초지역의 특수성

- **해방후 북한체제로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특수지역 (수복지역)**
북한의 정치체제를 겪은 유일한 지역, 한국전쟁후 미군정을 겪은 지역
남북한 체제 비교가 가능한 지역
- **한국전쟁 후 실향민 집단 정착 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 4만8천여명으로 추정
1975년 속초시 인구 71,475명 중에 실향민이 74%인 5만3천여명 파악
1999년 속초의 전체인구 88,914명 가운데 실향민은 34%인 약 3만여명 파악
- **분단체제에서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남북한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남북피해를 겪은 지역**
60-70년대 해상 충돌과 어선피랍사건 발생, 남북피해자 발생,
귀환납북어부의 인권유린, 극도의 반공 통제 지역, 연좌제 등

속초지역의 분단과 냉전에 대한 기억

- **한국전쟁의 상처 -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
- **실향민(월남인)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차별**
위장 월남자 색출작업
- **극도의 반공주의로 인한 사회통제**
- **선박 나포 및 납북어부 관련 사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속초, 고성 등에서 해마다 납북사건이 줄을 이어 한해 2백명 이상이 납북되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씩이나 납북되는 경우도 있었음.
- **연좌제 피해**
- **남북한 대립과 갈등 사건**
1969년 강릉발 서울행 KAL기 납북사건, 1971년 속초발 KAL F27기 납북 미수사건 등

속초의 냉전이데올로기 형성

- **실향민의 반공 적대의식**
- **다수의 남북 대립 무력충돌의 발생**
- **정권의 반공기지화 정책**
-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간첩 및 무장침투사건 빈발**
- **북파공작활동의 거점, 군 출신들이 속초지도층 구성**
 - 1951년 3월 설립된 육군 첩보부대 HID 36지구대 속초에 위치
 - 켈로부대 등 참전 특수부대 인사들 다수가 속초 정착
 - 1963년 11월 퇴임한 HID대장 김동석 속초시장 임명
 - 1968년 3월 북파 무장유격대인 '설악개발단(설악산개발단, 설악단)' 창설
 - 영혈사에 199기의 북파공작원 위패 안치 (36동지회)

동해안지역 남북 대립과 충돌 일지



1971년 1월 23일 피납 중에 고성 화진포에서 비상착륙한 KAL 여객기

동해안지역 남북 대립과 충돌 일지

- 1967년 1월 19일 **해군 56함** 동해상에서 북한의 지상포 공격으로 침몰
- 1968년 1월 23일 미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 북한 영해를 침범 나포, 12월 23일 송환 (이틀전인 1월 21일 김신조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서울 침투)
- 1968년 11월 3일 울진 삼척 일대 무장공비 60여명 침투
- 1969년 4월 15일 **미해군 첩보기 EC-121기**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격추선원 31명이 모두 사망
- 남한에서도 북파공작원을 집중 침투시켜 보복작전 수행 / 동해안 어선나포가 계속 이어짐
- 1969년 2월 25일 속초와 묵호, 삼척에서 암약해온 동해안 어부간첩단 15명이 검거 발표
-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YS-11** 여객기가 북으로 피랍되는 사건 발생(범인 속초 영랑동 조창희) 11명의 피랍자 미귀환
- 1971년 1월 23일 속초에서 서울 가던 **대한항공소속 F-27기 납치 미수 사건** 발생 (범인 고성군 거진의 김상태)
- 1974년 6월 28일 **해경 경비정 제863호** 북한 경비정의 공격으로 격침 사건 발생

속초의 간첩사건 일지

- 1958. 7. 15 속초해상과 고성지구에서 무장간첩 8명 생포
- 1961. 2. 15 속초지서 형사대에서 간첩 1명 체포
- 1966. 9. 7 속초, 대진, 서울 등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해 오던 **고정간첩 16명 체포**
(월북한 가족 남하 포섭)
- 1969. 2. 25 동해안 **어부간첩단 15명 검거** (납북어부관련)
- 1970. 10.10 간첩선 1척, 거진 앞바다에서 격침
- 1978. 5. 19 무장 간첩선 1척, 거진 앞바다에서 격침, 8명 생포
- 1985. 12. 29 치안본부 속초 납북어부 간첩사건 등 발표
- 1998. 6. 22 속초 앞바다 북한 유고급 잠수정 1척 침투, 9명 자폭
- 양양 조산리, 포월리 간첩사건 등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사건(한국전쟁 중 월북했다가 다시 첩보원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음)

납북어부에 대한 개인적 기억

- 옆집아저씨 기관장으로 납북되었다 귀환. 항상 감시에 시달려
- 마을에 두번 납북되었다 귀환하여 1년6개월 실형을 살고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죽은 분도 있어
- 고등학교 졸업 동창은 육사 지원 신원조회에서 형이 납북어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 (어느해는 육해공사 지원 20명 중 12명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고 함)
- 1984년경 귀환납북어부를 친형으로 둔 친구가 모기관에 끌려갔다 1주일만에 반죽음이 되어 돌아옴. 친구는 학업포기
- 중학교 1학년 납북어부 송환 권기대회 친구가 혈서 썼음

납북어부는 얼마나 되나?

구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796	3,696	50	24	6	20
미귀환자	480	427	11	24	6	12

* 통일부 인도협력국 2007년 9월 통계

2011년 통일부에서 40명을 추가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미귀환자는 총 517명으로 확정

- 동해안의 경우 피납자는 1천7백명 이상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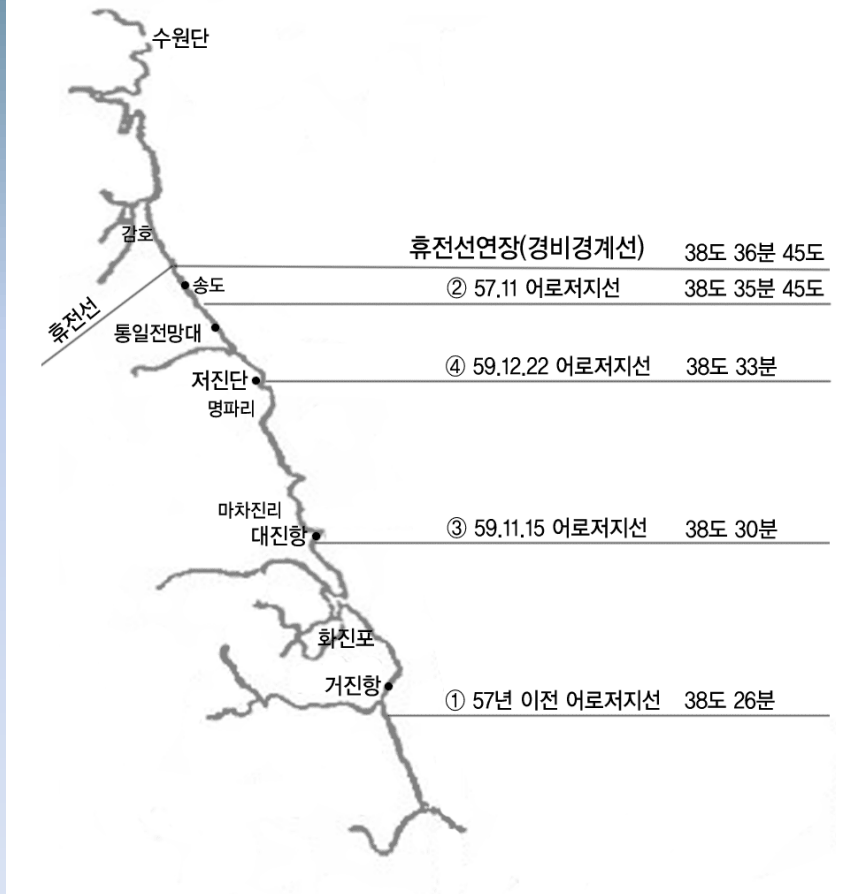
- 1957년 11월 9일 거진항 덕길호 등 8척(47명) 피랍을 시작으로 67, 68년에 절정을 이룸.

1967.11.3 어선 10척과 선원 60명 피납 / 1968.1.6 어선 7척과 선원 45명 피납
 /1968.8.6 다수의 어선과 선원 69명 피랍 / 1968.11.8 어선 7척과 선원 52명 피랍
 /1971. 5.13 거진 어협지도선 협동호와 선원 11명 피랍

-동해안에서는 1980년 남진호, 1982년 마산호 피납이 마지막

어선 피랍과 어로저지선의 변화 (1950년대)

어로저지선 변경도 (1957~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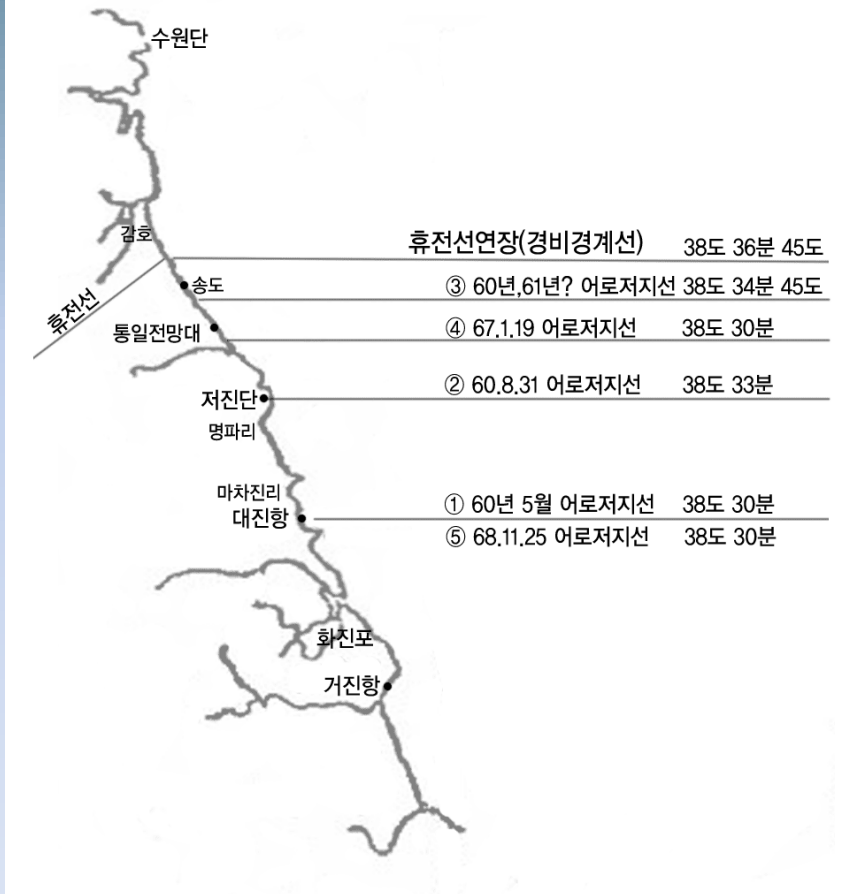


-어로저지선 변경과 관련하여 군과 수산 행정 이 의견 대립

-당시 북쪽에 어군이 형성되어 어로저지선을 북상할 경우 어획고가 급증했음.

어선 피랍과 어로저지선의 변화(1960년대이후)

어로저지선 변경도 (1960~70년대)



- 1968년 11월25일 어로한계선 변경하고 마차진리 238세대 속초 강제이주

- 1989년 4월 13일 다시 북위 38도 33분으로 확장되기까지 21년 동안 유지
다만 1975년 5월 6일부터 명태성어기간 동안만 3마일 북상 허용

- 현재 저도어장, 북방어장 성어기간 개방, 삼선녀어장은 1년에 3일개방

납북어부는 대공용의자?

調査따라 立件키로

漁撈中 拉北되는 漁夫

서울지검에서는 四일상 오점사장실에서 金致烈 점사장 趙賢九부장점사 洪淳逸 仁川지청장동의 동하고 최근 증가하는 어부들의 납북사건을 논의하였다

金致烈점사장은 「앞으로 납치된 어부들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의 「왕태적」로 인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유전선 근방에서 이모이 풍사하는 어부들은 유전선 이북으로 월북하여 북한에 도착한 단치되었다가 세뇌공작을 받고 돌아오는것인데 이들에 대한 경의를 해준다는 강화를 한 권관

어부도 철저히 수사할것이라한다 어부들이 유전선북방을 인식하면서까지 월북하는이유는 어장에탐내어 월북을 감행하는것이라고 한다

四일상오 서울지검 李龍濤점사는 서울세관 감사과직원 朴辰浩씨를 「지무유기」로 구속기소하였는데 朴씨는 지난八월二六일 「서울항공회사」金浦출장소장 蔡明源씨가 「공용」동지에서 셋가三百여만원의지외 사지품을밀수해온것을 알면서도 지

五日세동맞이 서울市議事記念式 서울시의회는 五日로써 창설三주년을 맞이하게되 어이날상오一〇시부터 의사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

贊助金다 自動式電

【大邱發】大邱전국에서 는 공적식(共電式)인사 내전화를 자동식으로 바

1959년 9월 4일자 동아일보
 검찰, 납북어부 국가보안법
 왕래죄 적용키로

1959년 10월 17일 국무회의
 어로저지선을 월북한 어선에
 대하여는 수산업법및 국
 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
 한다고 의결

1959년 12월 11일 귀환납북
 어부 속초항 소속 용진호 선
 원 6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보도상 최초 적용)

납북어부는 대공용의자?

1968년 8월23일 경향신문
납북어부 52명 2심에서 반공법 탈출
죄를 적용하여 유죄선고
피납되었다가 20일만에 귀환

懲役8월에 執猶

拉北漁夫 脫出罪 적용

【響川】22일하오 響川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韓萬春부
장판사)가 납북어부반출죄의로
부터지연의사 부죄선고불합
당면장의선보판(45·東韓시)
동 52명의 反北어부반출죄로
자 반공법 제6조1항(탈출

죄)을 적용, 징역8월의 집
행유죄 2년을 각각 선고
했다.
이들반 지간이연은 1968년 동해
안 어촌에서선보판의사 어
본 재판장 韓萬春 부장판사 등 5
해당부, 20일만에귀환하였었다

납북어부는 대공용의자?

대검공안부장관 한우신(韓沃申) 검사는 24일 어로자 직선을 면외 조인후 두번 이상 납북되는 어부에겐 반공법 9조의2와 국가보안법 10조의2(복수가중처벌)를 적용, 반정죄고정인 사형선 구형의 명령 전후조각을 지시했다.

大檢지시

死刑을 求刑

두번이상 拉北된 漁夫

첫가 1억원짜리 금사라기 땅 3백5평(서울 종로구 관수동 98의1)을 불려산한 국인파 화교와의 10년소송이 24일 대법원판결에 의해 한화인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 소송은 지난 57년부터 평의 심소유자 부위빈(曲

검찰은 강제로 납북된 경우라도 어로자직선용 법의 면 복피에 공력할수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반공법상의 탈출 잠입죄를 인정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범을가중처벌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대검은 또한 이날 납북어부들이 복피구성원으로 부터 지령을받고 귀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장신고를 했을때와 불완전 신고를 했을때는 간첩미수죄를 간첩미수죄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陰城選訴기가

대법원 특별1부는 24일 중북 음성-진천지구선거소송(원고 李忠煥 新民)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訴訟10년에 次

大法서 華僑

1968년 12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

반공법 잠입탈출죄 적용 판례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방침 지령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간첩미수죄 적용 지시

납북어부는 대공용의자?

- 1970년 12월 묵호 출신 납북어부 4명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했다고 구속 실형 선고.
- 1971년 대검찰청 월선조업 선원은 1년 이상 승선 금지, 2회 이상 납북어부는 가중처벌과 선박 몰수키로. 장기체류 납북어부 승선금지, 북의 지령 자수하지 않으면 최고형 처벌 발표.
- 1971년 한 해 속초 일대에서 3백여명의 어부들이 어로한계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선조업을 했다고 구속. 선장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까지도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구속.
- 1971년 10월 2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 이갑열 검사는 동해안서 납북됐다 귀환한 선원 984명을 모든 어선에서 승선을 금지시키는 조치.
- 1973년 9월 12일 대법원 납북어부에 대해 탈출죄,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 뿐만 아니라 반공법 상 간첩죄를 적용하는 판시

납북어부는 대공용의자?

北傀武裝船銃撃事件
漁船10隻 漁夫60名被拉
40分間 機關砲 난사
海軍艦艇 등 한隻도 없는 새 銃1名
60隻을 포위
船首를北으로 傀儡측 앞방 나머지 彈雨 중 고脫出
北傀少尉 키순
國軍降에 산들

어민들의 항변 “억울하다”
수백척의 어로활동 현장에서 40분간 총격전
이 벌어졌는데 어로지도선조차 눈에 띄지 않
았다.

-월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에서 넘어와
강제 나포한 경우도 다수. (토끼몰이식 나포)

-납북자가 모두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을 한
월선조업자는 아니었다. 기관고장과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다.

-야당에서는 월남전 참전에 따른 국방력 약화
가 납북사태의 원인으로 주목.

-당시 해상에서 위치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남북어부는 대공용의자?

漁撈 沮止線
환원선을 요구
東海漁民들결의

【東草】1일 동해안 60만 어민대표들은 속초에서 어로지시선환원 강원도어민투쟁위원회(위원장許昌鎔·거친어협장)를 결성하고 환원될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날 어민대표들은 정부가 가 어로지시선을 5마일남하시킨것은 영해에대한 주권의 포기이며 황금어장의 축소로 어민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오게될거라면서 중전선인 북위38도34분45초선으로 북상시키라고 요구했다.

1968.12.3 조선일보 기사

남북의 위험보다 생계가 더 심각했던 동해안 어민들의 절규

납북어부는 대공용의자?

- 당국의 납북문제 인식
납북사건의 주요원인이 어장을 탐내어 월북을 감행하는 어부들에게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국자들은 어부들이 월선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 통제하고 처벌하여 납북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 납북문제의 원인은 납북어부 당사자의 부족한 준법의식이나 탈법행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납북문제의 근본원인은 남북한간의 냉전과 대립구도이다.**
-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가장 고조되었던 **1967년과 1968년에 가장 많이 납북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때 미귀환 어부가 가장 많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는 납북사건도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선처리에 대한 시대적 변화

- 2005년 4월 13일 속초항 소속 황만호 선장 술에 취해 배를 타고 월북 후 5일만에 귀환, 고의성 없어 불구속처리
- 2006년 12월 25일 영덕 강구항 우진호 기관사 선주와 말다툼 후 만취상태에서 어선을 끌고 월북, 귀환 후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돼 집행유예 처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남북어부 송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1974년 묘향산에서 남북어부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사진

납북어부 송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어선피랍사건이 발생하면 UN군 대표에 의존하여 군사정전위에서 납북문제를 항의하고 송환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 60년대 후반부터 대한적십자사가 나서서 납북어부 송환을 북측에 요청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조직을 통해 송환운동을 펼쳤다.
- 귀환납북어부에 대한 지나친 인권유린으로 귀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 예상됨.
- 정부가 납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납북어부 송환을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한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87년 김만철 가족 월남을 이유로 북한 동진호 선원 송환 거부)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후 특수이산가족으로 납북피해자 상봉이 일부 이뤄짐. 납북어부 중 일부 선원은 탈북 귀환.

납북어부와 가족의 인권유린

- 납북되었다 돌아온 선원 대부분이 합동심문과정에서 월선여부와 동기, 북한에서의 찬양고무 행적,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기 위해 대부분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받았음. (경찰, 방첩대, 검찰 등)
- 어부 중 선장과 기관장은 대부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최소 6개월~2년까지 실형 복역했음. 선원 중에서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경우가 있음. (**잠입탈출죄, 고무찬양죄, 금품수수죄** 등 무차별 적용)
속초와 고성지역에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만 5백여명이 넘음.
아직까지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음.
- 귀환납북어부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은 항상 **정보기관의 일상적 감시**를 받아야했으며, 거주지를 옮기거나 여행조차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개인생활을 침해받고 살아옴. 정기적인 반공교육에 동원되어야 했음.

납북어부와 가족의 인권유린

- 납북어부와 가족 감시 – 일선경찰, 군 정보부대(보안사, 방첩대), 안기부까지 나서서 이중삼중의 감시 활동
- **북파공작원 활동 종용**받음 (김성학, 김영수씨 경우)
- 납북되었다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온 사람과 가족들은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음. (**취업, 진학 등 연좌제 적용**) 1980년 전두환대통령이 연좌제를 공식 폐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각종 신원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음.
- **고문후유증**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음. (고성 거진의 김무경 한쪽 청력상실, 아야진 김수성 이명증, 속초 장사동 최견식 등)

납북어부와 가족의 인권유린

- 귀환납북어부 중에 납북행위로 1차적으로 고문과 처벌 등의 피해를 받고, 이후에 **다시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르는 등 2차 피해를 받은 사례가 많음.** 동해안 간첩사건 중 상당수는 사찰기관에 의해 조작된 귀환납북어부 간첩 사건임.
- 속초 고성지역에서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려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사례만 2건. (김성학사건, 안정호사건)
- 지역사회에서는 납북어부의 인권유린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반공, 적대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고착화**시켰음.

납북어부와 가족의 인권유린

- 1968년 4월 27일 대진항 소속 종진호의 선장으로 납북된 윤○○씨의 아들 윤모씨의 호소문
- 큰 누나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는데 누나는 납북된 아버지 때문에 발령이 나지 않아 교원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 형은 중학교 1학년부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 했다. 형이 17살 되던 해, 경찰이 통행금지에 걸린 어부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명되어 형은 무고하게 끌려가서는 간첩으로 몰려 가혹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형은 어린 나이에 전기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방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다.
- 돈벌이를 하던 어린 가장이 아파 눕자 아무리 어머니 혼자 벌어도 집에 먹을 것이 부족해 6남매는 모두 굶주려야 했다. 몸이 많이 망가진 형은 고통을 참기 위해 술을 마셨고, 세상을 원망하며 나이 마흔에 생을 달리 하였다.
-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방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하사관으로 입대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납북자 집안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불행한 가족사 때문에 윤씨 본인은 가족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지금도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다.

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사건



東海岸지구 固定간첩단 打盡



어부가장 北傀

일당 15명, 赤化기

陸軍保安司서 개가 70명... (The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ilitary security unit and the number of personnel involved in the operation.)

조나

본사... (This section contains further details and possibly names of individuals involved in the case, including a list of names and their roles.)

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사건

- 69년 2월 속초 백학래, 고정길, 이동근, 이수구
- 75년 속초 김영수 군복무중 간첩으로 몰려 13년 복역
- 76년 4월 목포 김이남 무기형을 받고 10년 복역 (사망,재심신청중)
- 78년 7월 고성 박우용 7년 복역 (재심진행중)
- 79년 주문진 배일규 5년 복역
- 81년 7월 속초 이성국(10년)과 강경하(무기, 옥사) 이성국 재심무죄판결
- 81년 10월 고성 김흥규
- 83년 12월 이상철 10년 복역 (사망, 재심서 무죄)
- 84년 1월 김진용 기소유예
- 84년 1월 고성 윤질규 7년 복역후 가석방 (사망, 재심서 무죄)
- 84년 4월 강릉 김용태

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사건

- 85년 2월 고성 안정호 2년 복역 (재심서 무죄)
- 85년 5월 강릉 이병규 7년 복역 (재심서 무죄)
- 85년 12월 속초 김성학 1심 무죄 (이근안에게 72일간 불법구금 고문당함)
- 86년 고성 강종배 (87일간 불법구금, 간첩죄 무죄, 고무찬양 2년, 사망)

- 납북어부 간첩사건은 최근 진실화해위 등의 활동으로 많은 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무죄 선고. 그러나 아직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김영수씨의 경우)

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사건

- 박우용
연행일 1978년 7월 4일, 구속 7월 25일 / 연행기관 경찰(고성경찰서)
납북일 1968년 10월 30일 / 귀환일 1969년 5월 29일
형 집행 :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7년 복역
현재 강릉지원에서 재심 진행 중
- 21일 동안 불법구금, 구타와 물속에 머리박기 등 고문 가혹행위
- 연행 당일 형사가 박우용 집 천정에 몰래 붙은 책을 올려놓다가 발각.
- 연행되기 한달반 전 낯선 사람이 와서 술먹으라고 2만원 주고 가기에 경찰에 신고. 알고보니 대공형사와 잘 아는 사이.
- 박우용은 1974년 5월 간첩신고를 하여 상금 50만원을 탄 적도 있고, 처는 북을 찬양하는 사람 신고하여 상금 15만원 탄 적이 있음. 1972년에는 서울서 대공교육을 받고 경찰관 입회하에 시골로 11일간 반공교육도 했음. 1978년 1월 30일경 "간첩식별 요령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장 입회하에 하루 2개반씩 반상회에서 반공교육 실시한 적이 있음.
- 구속후에 처는 형제들이 강제로 이혼을 시켰음. 처남 강석돌도 납북되었다 돌아와 1년 옥살이. 납북당시 북한군에 맞아 한쪽눈 실명 진행중.

귀환납북어부의 명예회복

- 한국전쟁 이후 분단으로 가장 고통을 받은 집단은 바로 어부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이 한 집단에 대해 오랜 기간 이렇게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개별 간첩사건으로는 재일동포 간첩사건이 가장 많음)
- 단순히 생계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어부들. 납북되었다 돌아오면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간첩용의자로 내몰고 가혹행위를 하고 감시를 해야했던 암울한 과거 기억의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독재정권이 남북대립을 이유로 납북어부와 가족에게 가한 인권유린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는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귀환납북어부의 명예회복

왜 귀환납북어부는 억울한가?

- 바다에는 남북을 가르는 눈에 보이는 휴전선이 없다. 더구나 당시 장비로는 위치파악도 쉽지 않다. 아울러 남에서 월선조업을 하지 않아도 경계선을 넘어와 납치한 경우도 있다.
- 북한에 동조하지 않고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조업하다 실수를 하거나 강제로 피랍된 것을 마치 북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나친 조치.
- 1년 이상 장기 피랍자 중에서는 북의 회유와 압박으로 잔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회유와 압박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선택해 돌아온 국민을 간첩으로만 몰아 인권유린한 것은 귀환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

귀환납북어부의 명예회복

- 엄밀히 이야기하면 월선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북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 월선이나 피랍을 무조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처벌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심지어는 북에서 준 시계를 차고 왔다고 해서 금품수수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다.
-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로 납북어부를 처벌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 법은 그대로인데 시대에 따라 처벌이 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서도 어선의 월선사건이 다수 발생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 못함.
- 아직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기록이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지금은 해체된 진실화해위의 조사로 재심 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개별사례만 있을 뿐이다.

정부의 남북피해자 지원의 한계



2008년 3월 속초경찰서 주최로 열린 남북피해자 피해보상신청 설명회

정부의 납북피해자 지원의 한계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활동**

법률 제8393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10월27일 시행, 3년 한시법)에 따라 구성 활동

- 납북자 지원 및 보상을 처음으로 시행했다는데 의의가 큼.
- 3년 이상 억류된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최대 2천7백만원)과 탈북납북자 정착금만 지급처리후 종결.
- 납북자가족모임의 요구로 입법하면서 귀환납북어부의 공권력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문구만 삽입되었음.

정부의 납북피해자 지원의 한계

- 귀환납북 중 공권력 피해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속초의 김성학씨(이근안 고문)만 보상금 수령. 다른 신청자(10건 미만)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추정.
- 보상신청 3년 한시 적용 기간이 만료되어 법이 유명무실해져 버림.
- 납북피해자의 다수를 이루는 납북어부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유린 등에 대한 진실규명은 아예 손도 대지 않음.
- 납북피해자 보상을 하는 특별법은 결국 귀환납북어부들을 다시 우롱하고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법이 되고 말았음. 정부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

정부의 납북피해자 지원의 한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2006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출범. 5년 한시적 활동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개별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 조작을 밝혀내 재심 권고를 진행했음. 그러나 2010년 활동이 종료되면서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더 충분히 조사 작업을 진행하지 못함. (마지막 보고서인 2010년 상반기 활동보고서에 보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미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이 위축됨.
- 진실화해위에서 지난 2009년 상반기 속초와 고성지역의 귀환납북어부 피해 사실 관련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활동이 위축되면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 진실화해위에서 더 충분한 조사를 하고,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귀환납북어부의 명예회복과 복권 조치를 위한 기초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뤄지지 못함.

정부의 납북피해자 지원의 한계

-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 현지 민원상담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해당부처에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음.

귀환납북어부 인권유린 문제해결의 당위성

- **국가 정체성 확립에 꼭 필요한 일**
납북되어 억류되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선택해 귀환한 납북어부를 국가가 나서서 간첩으로 내몰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일이다.
- **대한민국이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임을 보여줘야**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유민주국가임을 보여주는 국가 정체성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인권이 지켜지는 따뜻한 나라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 **피해당사자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아직도 납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다수 있다. 비록 고령으로 사망해도 우리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사범이라는 주홍글씨는 후손에게도 되물림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 **인권 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는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량한 어부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인권 유린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진상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보상이나 위로금 지급은 그야말로 면피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의 굴레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예회복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이 있어야 한다.**

생계를 위한 단순 월선행위를 국가전복의 의도로 규정하거나 북에 억류된 것을 간첩교육을 받고 온 것을 판단하여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적용한 것은 국민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잘못된 조치임을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회와 명예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 **피해자 일괄적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재심청구와 재판 진행은 너무 힘들다. 재차 고통을 상기하는 일이며, 당사자들이 연로하고 사망한 경우가 많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월선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건 거의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일괄 구제를 위한 입법과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1차 피해자 일괄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거 과도한 법적용의 위헌여부 판정 등이 필요하다.
 - 2차 피해자(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한 재심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적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고문 피해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보상과 의료지원이 뒷따라야 한다.
- **진실화해위와 같은 과거사 진실규명 기구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남북한 대립갈등의 완화와 동해안 공동어로수역 운영, 특수이산가족상봉의 재개 등 남북한 협력과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

감사합니다